

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축 조례
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2 월 27 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84호

붙임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제13호는 다음과 같이 “30제곱미터”를 “40제곱미터”로 한다.

13.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·경비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의 합계 40제곱미터 이하인 것
(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